

## 사회적 취약계층 “준용 관련법” 및 “제출서류” 안내

- “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”에 해당하는 자  
: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
- “장애인”에 해당하는 자  
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출이 가능한 자
- “한부모가족 지원법”에 해당하는 자

<b>관 련 법</b>	<p>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</li> <li>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</li> <li>다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</li> <li>라. 가로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</li> </ul> </li> <li>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</li> </ol>
<b>제 출 서 류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</li> <li>2. 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/ol>

- “다문화가족지원법”에 해당하는 자

<b>관 련 법</b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li> <li>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li> </ul> </li> <li>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</li> <li>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li>3. "아동·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/li> </ol>
<b>제 출 서 류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적취득증명서 1부 (국적 취득시)</li> <li>2.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3. 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/ol>

□ “여성가장”에 해당하는 자

: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 중 제출이 가능한 자

□ “보훈보상대상자”에 해당하는 자

: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이 가능한 자

□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

관 련 법	<p>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</li> <li>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</li> <li>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</li> <li>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</li> <li>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/ol> <p>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</p> <p>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p>
제 출 서 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유공자(자녀) 증명서</li> </ol>

□ “아동복지법”에 해당하는 자(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)

관 련 법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"아동복지시설"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14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
제 출 서 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(퇴소)증명서 1부</li> <li>2.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/ol>

**“북한이탈주민”에 해당하는 자**

: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

**“결혼이주자”에 해당하는 자**

: 결혼비자(F-6비자) 제출이 가능한 자

**“지방인재”에 해당하는 자**

: 최종학교 졸업(예정), 휴학, 재학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

**“고졸”에 해당하는 자**

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, 학자금대출/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제출이 가능한 자

(한국장학재단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대학 학자금/장학금 신청사실이 ‘없음’ 을 증명하는 서류임)